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공무원인 남동생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던 누나는 유족급여도 못 받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 없다.



글/ 박종복 변호사

Q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동생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동생은 40세가 넘도록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누나인 본인 집에 거주하며 함께 살아왔다. 본인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본인은 유족이 아닌가? 본인은 동생의 퇴직연금 등을 상속도 못 받는가?

A

공

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의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귀하와 같은 형제, 자매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망한 공무원의 누나인 귀하는 설사 공무원인 남동생 사망 당시 남동생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이 아니고 따라서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 누 1945 판결)하였는 바, 귀하의 남동생은 퇴직한 것이 아니고 재직중 사망한 것이므로 애당초 퇴직급여는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가사 귀하가 남동생에게 퇴직급여가 발생되었고 귀하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유족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1998. 12. 24. 96 헌바 73 전원재판부)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는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고, 동생의 퇴직급여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행법의 규정 및 판례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